



보도 일시	2022. 12. 21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12. 21.(수) 10:00
담당 부서	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	책임자	과 장 박인호 (044-204-3901)
		담당자	사무관 박운영 (044-204-3912)

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.

- (추진 개요) 국세청(청장 김창기)에서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 - 다만,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,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 「공익법인 전담팀」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.
- (탈루 유형)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 한도(5%)를 초과하여 보유
 - ②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,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
 - ③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,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
- (향후 계획) 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,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 - 한편,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.

1

사후관리 개요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, 의료, 사회복지,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
 -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,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 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| 공익법인 주요 위반행위 |



- 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,
 - 자산·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「공익법인 전담팀」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 - 특히, 금년에는 골프장, 유흥업소,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하여 사적유용,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.

2

사후관리 추진실적 및 주요 탈루사례

-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,569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.
-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|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 |

1	주식보유 기준위반	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동일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 보유비율(5%) 초과 보유
2	공익법인 사유화	공익법인이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자녀를 거짓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,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
3	공익자금 불법유출	공익법인 이사장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횡령하여 공익자금을 이사장의 사적경비에 사용
4	부당 내부거래	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에 무상사용하게 하여 부당 내부거래금지 위반
5	공익목적 미사용	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임의로 방치하여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
6	특수관계인 부당채용	공익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등 인건비 지급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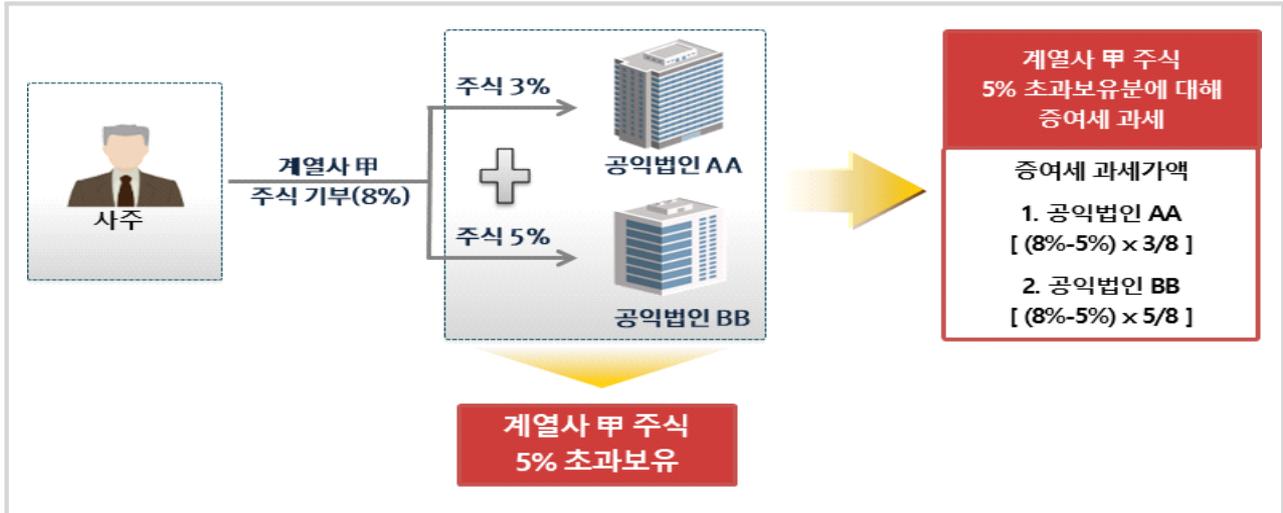
향후 추진계획

-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, 공익자금 불법 사외 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,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
- 한편,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「국민의 국세청, 신뢰받는 국세행정」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[사 례 ①]
주식보유
기준위반

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
(계열기업 주식을 법정한도 '5%'를 초과하여 보유)

□ 주요 탈루내용



- (주식보유 기준초과) 사주가 계열사 甲 주식을 공익법인 AA에게 3%, 공익법인 BB에게 5%를 각각 출연
 - 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%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, 사주가 공익법인 AA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%로서 **법정 보유한도(5%)를 초과**
-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법상 허용되는 **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**

□ 관련 규정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16②, §48①·⑪, 같은법 시행령 §37, §41의2

-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이 **발행주식총수 등의 5%*** 초과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**증여세 부과**
* 운용소득 80% 이상 공익목적 사용, 출연자 등의 이사 1/5 초과금지 등 요건 충족시 1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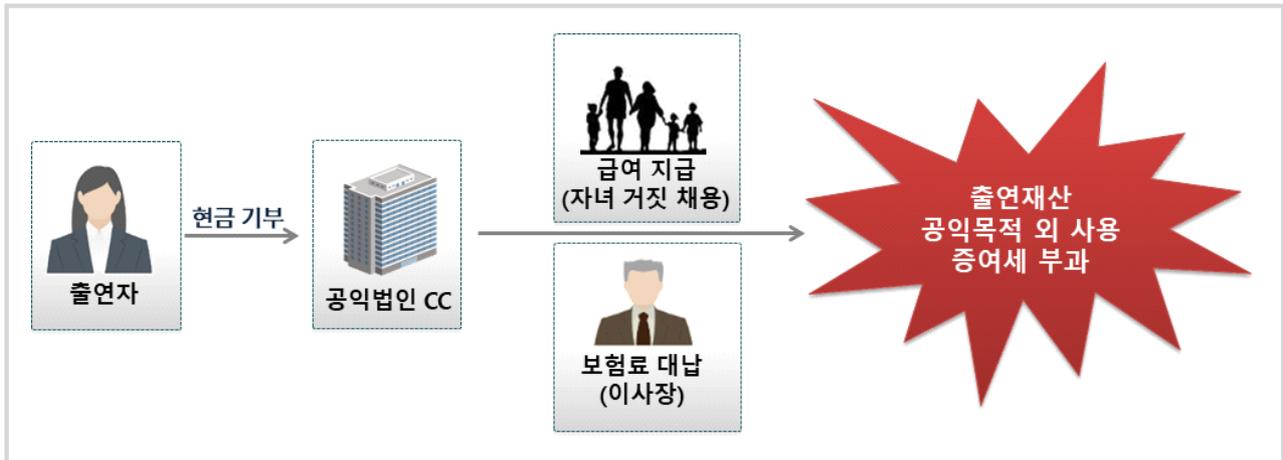
□ 조치 사항

- 공익법인이 동일 계열사 주식의 **법정 보유한도 5%를 초과 보유하여** 공익법인 AA와 BB에게 **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**

[사례 ②]
공익법인
사유화

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
(자녀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, 이사장 보험료 대납)

□ **주요 탈루내용**



- (허위 인건비) 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
 -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간에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하여 허위 근로사실 적발
- (보험료 대납) 공익법인의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하여 납부
 -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검증한 결과 보험료 대납 사실 확인

□ **관련 규정:*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48②(1), 같은법 시행령 §38

-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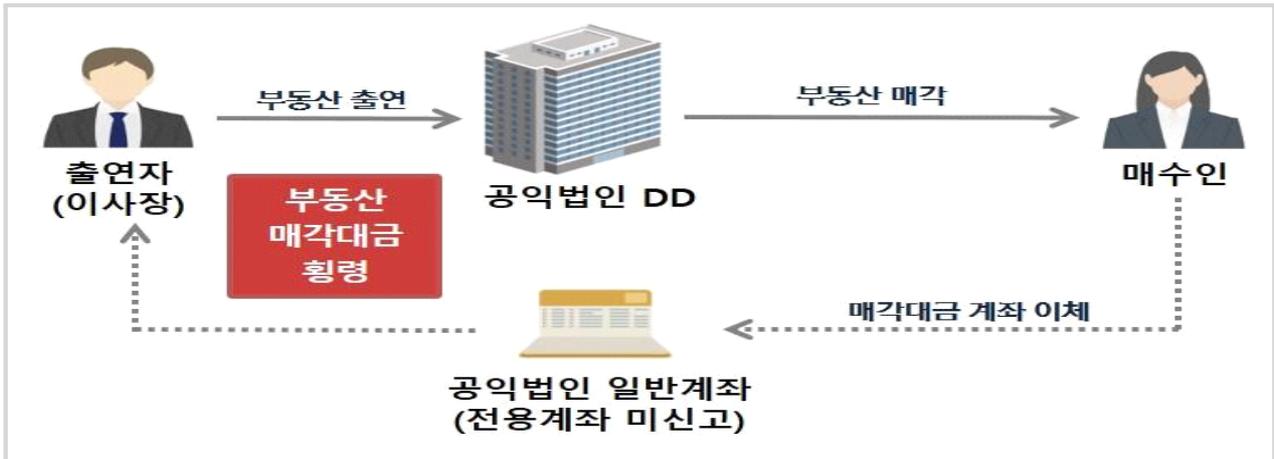
□ **조치 사항**

-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

[사례 ③]
공익자금
불법유출

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
(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)

□ **주요 탈루내용**



- (매각대금 횡령) 공익법인 DD의 이사장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흥비, 가사경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
 - 공익법인의 부동산 취득·양도내역을 전산분석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검증한 결과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
- (전용계좌 미신고)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,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

□ **관련 규정:*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48②(4)(5), §50의2, 같은법 시행령 §38④·⑦

-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, 3년내 90% 이상(1년내 30%, 2년내 60%) 사용해야 함
-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과함

□ **조치 사항**

- 공익법인이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
- 전용계좌를 미사용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(0.5%) 부과

[사 례 ④]
부당 내부거래

출연재산 무상사용 등 부당 내부거래 (출연자의 자녀에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무상임대)

□ 주요 탈루내용



- (출연재산 무상임대) 공익법인 EE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의 아들에게 무상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
 - 출연받은 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분석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아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한 사실 확인
 -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,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주차장 부지 무상임대 사실 확인

□ 관련 규정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48③, 같은법 시행령 §39

-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
 -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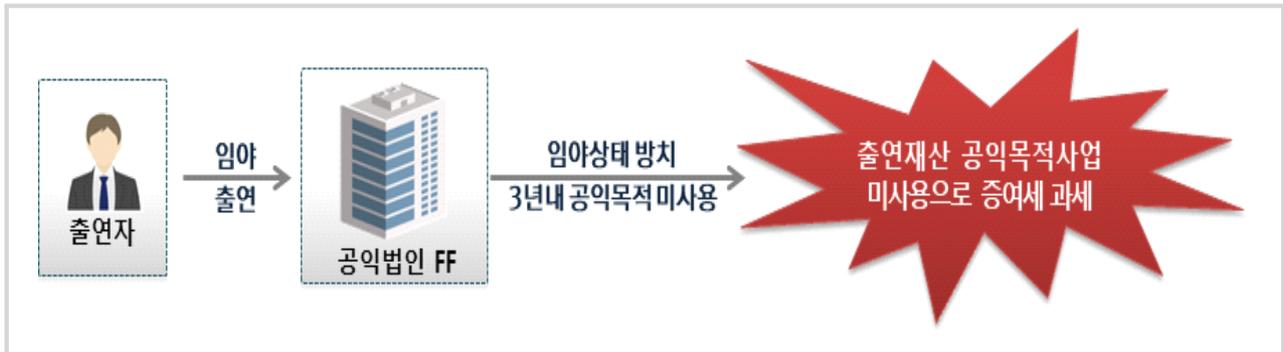
□ 조치 사항

-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

[사 례 ⑤]
공익목적
미사용

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하여 공익목적 미사용
(출연받은 임야를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)

□ **주요 탈루내용**



- (공익목적 미사용) 공익법인 FF는 건물 신축목적으로 임야를 출연받고,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
 - 출연받은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지도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,
 -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인허가 신청자료를 수집하여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적발

□ **관련 규정:*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48②(1), 같은법 시행령 §38

-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
 - 다만,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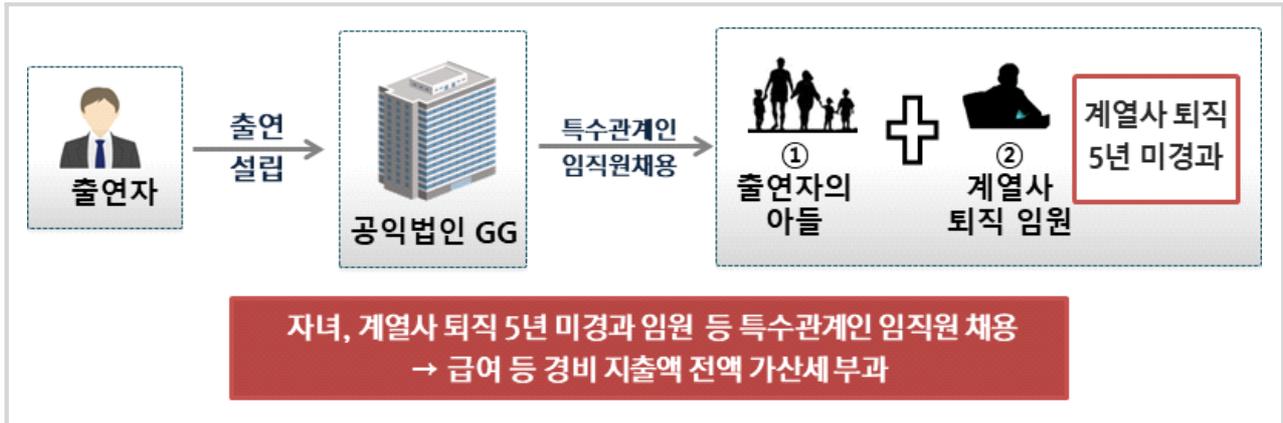
□ **조치 사항**

- 공익법인이 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

[사례 ⑥]
특수관계인
부당채용

출연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제한 위반
(자녀,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 채용)

□ 주요 탈루내용



- (특수관계인 채용) 공익법인 GG는 이사장의 아들과 계열기업 퇴직 임원 등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
- 친인척 정보, 법인등기,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전산분석하여 출연자의 친족과 계열기업 퇴직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확인
- (채용제한 위반) 출연자의 자녀, 계열사에서 퇴직한 기간이 5년*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시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위반
* 특수관계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5년(그 외 3년)

□ 관련 규정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§48⑧, §78⑥, 같은법 시행령 §80⑩

-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/5을 초과하거나,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·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
- 다만,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의사, 교직원 등 전문자격 소지자*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
* 의사, 학교 교직원, 아동복지시설 보육사, 도서관 사서,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

□ 조치 사항

-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, 복리후생비 등 직·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